

의안번호	제 190 호
의결년월일	1997. 10. 29.
의결사항	원안가결

발의자	박병수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7.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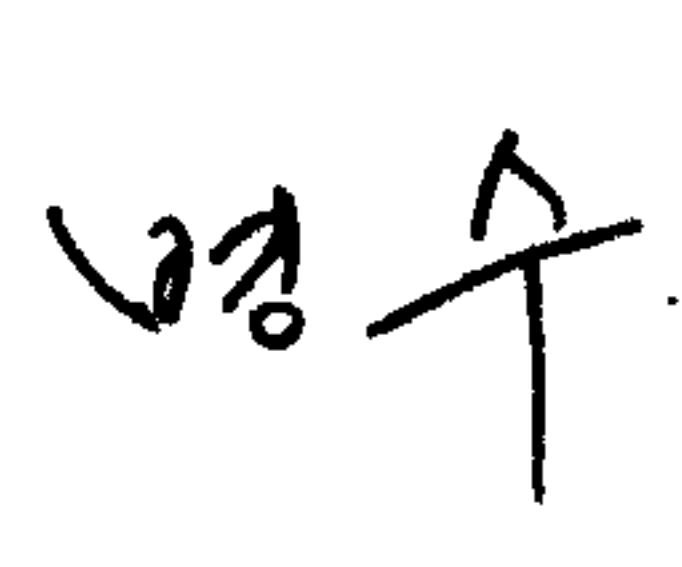
제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 신 : 의 장

제 목 :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건 1부. 끝.

발 의 자 :   (한성원)
(찬 성 의 원 서 명 : 붙임 참조)

제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 제 안 설 명

-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2. 제 안 이 유

- 제67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7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고자 합니다.
- 10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 변경 승인의견, '96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96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 10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년 예비비 지출승인, 96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의결하고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기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찬성의원서명

성명	서명	(인)
김기현	김기현	
이홍식	이홍식	
김기현	김기현	